

다자녀 특별공급 | 구비서류 안내문

■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

서류제출 기한	2021년 11월 23일(화) ~ 11월 28일(일) 16시 도착분까지 (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)
제출방법	견본주택 방문접수
수신처	진주시 충무공동 31-9번지 (대표번호: 055-763-8700)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.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. •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,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•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,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출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특별 공급 공통 서류	○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
	○	인감도장			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
	○	신분증		본인	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(재외동포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)
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	본인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	본인	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"상세"로 발급 -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
	○	청약통장순위(가입) 확인서	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발급(단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) 인터넷청약(청약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"입주자 모집 관련" 현재 거주지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(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)
	○			부양가족	[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] -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
	○	단신부임 입증서류		본인	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(90일 초과)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,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
다자녀 가구	○	주민등록표등본		배우자	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가족관계증명서		직계존속	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
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	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 발급]
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		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	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(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) 3세대 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
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		본인(또는 배우자)	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제출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)
	○	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	임양의 경우
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	본인(또는 배우자)	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	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직계비속		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·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		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, "상세"로 발급
	○	인감증명서	청약자	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분에 한함)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
	○	인감도장	청약자		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
	○	위임장	청약자	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신분증 및 인감도장	대리인	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
※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11.01(월)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.

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(검증)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 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